

# 재난대비훈련지침

## I. 총칙

### 1. 목적

- 이 지침은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'법' 이라 함)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'영' 이라 함) 제 82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
- 법 제1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규모 재난의 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상시훈련체제를 구축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

-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

용 어	내 용
재난대비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·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써 조직의 내부 구성원과 관련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 관련사항을 숙지 및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</li> </ul>
재난관리책임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제3조(정의)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</li> <li>-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영 제3조의 기관</li> </ul> </li> </ul>
긴급구조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제3조(정의)제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방방재청·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만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</li> </ul> </li> </ul>

-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6조제4호·제34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 분야 훈련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II. 재난대비훈련 개요

### 1. 훈련 필요성

- 모든 재난은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의 단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,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역량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
  - 대응역량제고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대응계획 수립, 이행절차서 작성, 교육·훈련, 환류·평가 등 재난대비활동이 필수 요소
- 또한 재난현장에는 일원화된 사고지휘 및 응원조정체계와 공공정보, 정보통신 지원, 방재자원지원 분야 공통협력이 필요
- 아울러 최근의 재난유형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역량과 고유 기능에 대한 협업행정기반의 횡적·종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

협업행정이 필요한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(13)

①상황관리총괄 ②긴급생활안정지원 ③재난현장 환경정비 ④긴급통신지원 ⑤시설응급복구 ⑥에너지기능 복구 ⑦재난수습홍보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⑨교통대책 ⑩의료방역 ⑪자원봉사관리 ⑫사회질서유지 ⑬수색?구조구급

○ 따라서 사고지휘체계, 응원조정체계, 공공정보, 정보통신, 방재자원 지원 등 공통협력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체계가 전체적인 재난관리 틀 아래 움직이도록 평소부터 교육과 훈련 필요

- 특히 재난현장 즉시 작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을 상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대비훈련이 중요함

### 2. 훈련 주요 법령

구 분

내 용

재난대비훈련

?법 제73조제1항

- 안전행정부장관, 시?도지사, 시장?군수?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?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

?법 제73조제2항

-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
훈련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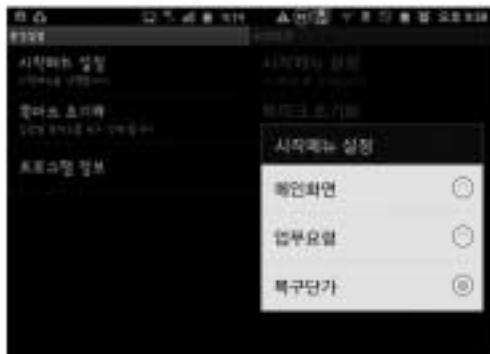
?법 제73조제4항

**정책정보**

- 법 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과 법 제74조에 따른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
 훈련 횟수

? 영 제82조제1항 및 제2항

-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
- 자체훈련은 수시로 실시



훈련 참여

?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

훈련 통보

? 영 제82조제3항

-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 전까지 훈련일시, 훈련장소, 훈련내용, 훈련방법,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

입부요령	입부요령
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	사유서절 >> 어떤 일 어떤 복구 복구 >> 이상여부
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(준영)	- 자연재해를 개척지 또는 산지 등 조사대상지역에 해당 지구(산지) 및 100m 이상(100m 이상) 대상을 포함 하고 조용 지역, 거주지, 시설, 기타 시설물 등 복구 요
이재민 구호	- 당해지역 구호지역 구호현황(구호지역 구호조사 - 조사현, 상황현, 통상적 현 상황조사 - 피해현 상황
사유서절	- 원인, 복구계획을 검토, 복구계획수립(현황) (현 현황)
공공시설	- 원인, 복구계획수립(현황) (현황) (현황) (현황) - 복구현황이 복구현황(현황) (현황) (현황) (현황) - 복구현황이 복구현황(현황) (현황) (현황) (현황)

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
 훈련을 위한  
 교육 실시

? 영 제82조제5항

-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함.

복구단가	관계법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 >> 공통시설 >> 관교하천	1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 2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 3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단가</th> <th>단위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●관교하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하)</td> <td>10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15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20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25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●관교하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하)</td> <td>10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15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20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교하천(100m 이상)</td> <td>250,000</td> <td>㎡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단가	단위	비고	●관교하천				관교하천(100m 이하)	10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15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20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250,000	㎡		●관교하천				관교하천(100m 이하)	10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15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200,000	㎡		관교하천(100m 이상)	250,000	㎡		1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 2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 3. 국토교통부(이하 "국토")
구분	단가	단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관교하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하)	10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15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20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25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●관교하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하)	10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15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20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교하천(100m 이상)	250,000	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훈련 비용의 부담

? 영 제82조제6항

-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 함. 다만,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음

훈련의 평가 실시

? 영 제83조제1항